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칙

### 第 1 章 總 則

#### 第 1 條(名稱)

本會의 명칭은 「韓國新聞放送編輯人協會」라고 칭한다.

#### 第 2 條(所在地)

本會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第 3 條(目的)

本會는 國內日刊新聞·通信社 編輯關係 幹部 및 放送社 報道關係 幹部들의 협동단체로서 한국 언론인들에 부여된 중대한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음을 주요사업으로 삼는다.

1. 言論自由의 守護와 그 伸張에 필요한 사업.
2. 言論人들의 품위를 향상하고, 그 지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공통과제의 연구와 업무에 관련된 정보의 상호교환.
3. 新聞·通信 및 放送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국내 언론계의 힘을 합일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4. 회원간의 親睦과 團합의 增進.

### 第 2 章 會 員

#### 第 4 條(구성)

本會의 회원은 正會員과 名譽會員으로 한다.

1. 正會員은 國內日刊新聞·通信·放送社의 論說委員室, 解說委員室, 編輯, 報道, 出版 및 뉴미디어 관련 部長級 이상의 언론인으로서 本會의 목적에 찬동, 가입을 희망하는 者로 한다.

但 正會員으로서 前記의 現職을 떠났더라도 그 職을 떠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

지는 회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2. 名譽會員은 正會員資格期間이 經過한 者와 그 밖에 本會 創立 또는 발전에 功이 크고 本會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인사 중에서 會員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확인한다.
3. 本會 會長을 역임한, 또는 本會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會員은 運營委員會의 추천과 總會의 승인을 거쳐 顧問에 추대할 수 있다.

#### 第 5 條(會員의 權利義務)

正會員은 本會則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 第 6 條(會員의 資格喪失)

本會의 명예를 뚜렷이 毀損했거나 本會의 사업을 저해한 正會員 및 名譽會員은 審査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會長이 除名한다.

### 第 3 章 總會

#### 第 7 條(總會)

1. 本會 總會는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2. 代議員은 當연직 代의원과 選出 代의원으로 조직한다.

#### 第 8 條(代議員의 選出)

1. 本會의 任員과 運營委員은 當연직 代의원이 된다.
2. 選出 代의원은 各 言論社(이하 各社)의 本會 正회원 10인당 1인의 비율로서 當해사의 正會員이 選출한다.  
但 代議員을 배정하고 남은 單수 5인 이상의 會員數에 대하여는 1인의 代의원을 추가 配定한다.
3. 正會員 10인 미만의 언론사에 대하여도 1인의 代議員을 配定한다.
4. 無所屬 會員은 無所屬 회원 10인의 連記名 署名 推薦으로 10인당 1인씩의 代의원을 選出할 수 있다.

### 第 9 條(總會의 召集과 運營)

定期總會는 2년마다 1월중에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1. 臨時總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장이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在籍代議員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會長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會長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定期總會의 소집은 1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4. 臨時總會의 소집은 3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 第 10 條(總會附議事項)

1. 會則 改正.
2.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의 選出.
3. 總會가 있는 연도 예산 및 전년도 결산, 但 총회가 없는 해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체한다.
4. 理事會 보고사항.
5. 기타 本會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第 11 條(總會의 成員)

總會는 재적 代의원의 過半數 出席(委任出席 포함)으로 성립한다.

### 第 12 條(總會의 議決)

總會의 의결은 이를 特別議決과 普通議決로 나눈다.

1. 特別의결은 각사에 대하여 구속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을 말하며 이 때에는 각사는 1개의 議決權만을 인정, 代의원중에서 각사 1인이 이를 행사하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2. 普通議決은 特別의결사항 이외의 의결을 말하며 모든 代의원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 때에는 出席代議員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可否동수시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第4章 任員

### 第13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2. 副會長 7인 以內.
3. 理事 20인 以內.
4. 運營委員長.
5. 監事 2인.

### 第14條(任員의 選出)

本會의 임원은 정회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但 運營委員長 선출은 第18條 2項에 따른다.

### 第15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이 임기중 결원이 된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후임자를 補選할 수 있으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前任者의 殘任기간으로 한다.

### 第16條(任員의 職務)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를 소집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하며 會長 유고시에는 會長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會長 · 副會長은 운영위원회와 各委員會에 참석, 의결권을 갖는다.

監事は 本會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한다.

## 第5章 理事會 · 運營委員會

### 第17條(理事會)

1. 理事會는 會長 · 副會長 · 理事 · 監事 등 任員으로 構成한다.

理事會는 會長이 의장이 된다.

2. 理事會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1) 年度事業計劃.
- (2) 豫算 및 決算.
- (3) 總會에서 委任받은 案件.
- (4) 各委員會 附議事項.
- (5) 其他 本會의 運營에 관한 事項.

3. 理事會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출석(委任出席포함)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可否同數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第 18 條(運營委員會의 組織)

1. 運營委員會는 各社 編輯·報道局長과 本會 會長團으로 구성한다.  
위의 편집·보도국장은 그 직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후임자가 자동승계한다.
2. 運營委員會委員長은 운영위원회에서 互選한다.
3. 運營委員會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출석(委任出席포함)에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可否同數時에는 議長이 결정한다.

#### 第 19 條(運營委員會의 附議事項)

運營委員會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과 기타 本會 運營에 긴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但 이 심의는 필요에 따라 理事會에 위임할 수 있다. 運營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3. 會則 改正案.
4. 本會 運營에 관한 重要事項.

#### 第 20 條(各委員會)

1. 本會에 審査, 報道自由, 國際, 南北交流, 報道用語統一審議委員會를 둔다.
2. 理事會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特別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 第 21 條(各委員會의 議決)

1. 各委員會 의결은 第18條 3項 규정에 따른다.

但 審査委員會의 의안 중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各委員會의 의결사항은 理事會에 보고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第 22 條(審査, 報道自由, 國際, 南北交流, 報道用語統一審議委員會 委員選出과 定員)

各委員會의 위원은 正會員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고, 各委員長은 회장단에서 선임하며 各委員會의 정원은 20人 이내로 한다.

#### 第 23 條(任期)

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補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殘任기간으로 한다.

#### 第 24 條(審査委 附議事項)

審査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新入회원의 適格與否.
2. 會員除籍에 관한 事項.
3. 言論人的 品格에 관한 事項.
4. 總會召集公告後 接受된 入會願書는 總會가 지난 후 처리한다.

#### 第 25 條(報道自由委員會 附議事項)

報道自由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言論自由 實態에 관한 事項.
2. 筆禍事件에 관한 事項.
3. 其他 言論人的 權益擁護에 관한 事項.

#### 第 26 條(國際委 附議事項)

國際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國際交流에 관한 事項.
2. 國際情報 處理에 관한 事項.
3. 國際會議 또는 세미나에 관한 事項.
4. 其他 國際行事に 관한 事項.

第 27 條(各部長會議의 運營)

會長 또는 理事會는 보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各社의 部長들을 소집, 담당분야의 문제점에 관하여 토의, 그에 對한 대책과 실천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이 會議의 결의사항은 理事會에 보고되어야 한다.

各部長會議는 간사가 대표하되 간사는 부장회의에서 호선한다.

第 28 條(緊急事項의 處理)

會長은 各級會議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단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會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소집,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대한 사항이라고 理事會가 판단할 때는 總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애에 向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第 29 條(書面決議의 活用)

本會則에 의한 各級會議의 소집 운영에 있어 시간상 또는 거리상의 이유로 會議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會長 또는 各委員長은 「書面決議」를 할 수 있다.

이 때 議案의 승부, 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찬반의견의 표시는 발신자의 自筆署名 또는捺印을 하여야 유효하다.

第 6 章 地方組織

第 30 條(支部)

本會는 各市道에 本會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31 條(支部任員)

各 支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支部長 : 1인.
2. 運營幹事 : 1인.

第 32 條(支部任員 選出)

支部任員은 당해지의 本會 회원이 호선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支部任員의 임기는 本會則 第15條에 準한다.

**第 33 條(支部의 活動)**

支部는 각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언론제작 및 보도자유에 관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자유에 관련된 사안에는 1차적 조사를 지부활동으로, 2차적 활동이 필요할 때에는 지부장이 본부에 요청한다.

但 報道自由에 관련된 조사활동 이외의 對外的 活動 일체는 運營委員會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 34 條(支部任員의 職務)**

支部長은 당해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諸會議의 소집과 지부사무를 統理한다.

**第 35 條(研究所)**

本會는 한국언론의 연구발전을 위해 本會 附設로 本會 正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구성되는 신문 연구소를 둘 수 있다.

**第 36 條(準用)**

第6章에 特別規定이 없는 사항은 本會則規定에 準한다.

**第 7 章 執行部署****第 37 條(事務局)**

本會의 사무와 附帶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會長소속하에 事務局을 둔다.

事務局에 總長 1인을 두고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事務總長은 理事會의 동의를 얻어 會長이 임명한다.

事務總長은 本會 사무를 집행하며 직원을 감독한다. 事務局 직원은 事務總長의 제청에 의하여 會長이 임명한다.

事務局의 職制와 직원의 복무규정은 理事會의 의결로 會長이 정한다. 事務總長은 各委員會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 第8章會計

### 第38條(資産의 種類)

本會의 資産은 다음 各號로써 充當한다.

1. 入會金.
2. 定期會費.
3. 贊助金.
4. 資産에서 生하는 果實.
5. 其他 收入.

但 入會金 및 정기회비는 定額을 理事會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 總會에 보고한다.

### 第39條(會計年度)

本會 會計年度는 1月 1일부터 12月 말일까지로 한다.

### 第40條(豫算·決算)

每會計年度의 豫算서와 決算서는 監事의 감사를 거쳐 總會에 제출한다.

但 定期總會가 없는 年度에는 理事會에 제출한다.

## 第9章雜則

### 第41條(解散)

本會 解散決議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 때에 殘餘財産은 理事會의 결의에 따라 언론관계단체에 기부한다.

## 附則

1. 本會則에서 未備된 사항은 理事會 결의로써 보충한다.
2. 本會則은 總會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本會則은 改正前의 특별회원은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이 된다.
4. 本會則을 改正한 第16回 臨時總會는 1969年度 정기총회에 대신한다.
5. 本會則의 改正과 동시에 改正前 任員의 임기는 1969년 1월 25일 만료된 것으로 한다.

6. 第23回 定期總會에서의 本會則 改正은 방송인들의 희망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7. 第37回 定期總會에서의 本會則 改正은 第36回 定期總會(1988년)의 결의에 의한 것이다.
8. 第37回 定期總會에서 선출된 임원은 代議員大會에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9. 第44回(96년) 臨時總會에서의 本會則 改正은 신문인과 방송인이 本會 구성의 基幹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1957年 4月 7日 制定

1959年 4月 6日 改正

1963年 4月 5日 改正

1965年 4月 5日 改正

1969年 1月 25日 改正

1973年 1月 27日 改正

1975年 1月 25日 改正

1983年 1月 28日 改正

1989年 1月 31日 改正

1991年 1月 18日 改正

1995年 1月 20日 改正

1996年 1月 23日 改正

1997年 1月 24日 改正

1998年 1月 26日 改正

2003年 1月 29日 改正